

2024년 하반기 중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

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2024년도 하반기 중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4년 5월 10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모집개요 및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4. 5. 10.(금) ~ 2024. 5. 24.(금) 평일 09:00~18:00
- 사업기간 : 2024. 7. 1. ~ 2024. 12. 20. (5개월 20일)
- 모집인원 : 140명
- 신청장소 :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
- 사업구분 : 일반/청년 사업
 - ※ 청년사업 :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(1984.6.30. 이후 출생)만 지원 가능
- 업무내용 : 경제, 신체, 디지털, 기후환경 약자를 위한 일자리 분야
- 근무지 : 중구청 각 부서 사무실, 동주민센터 사무실 및 실외 현장
 - ※ 붙임 2024년 하반기 중구 동행일자리 사업부서별 모집계획 참조
- 신청방법
 -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희망 사업번호 기재 (3개까지 기재)
 - ※ 사업번호 : 붙임 2024년 하반기 중구 동행일자리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조
 - ※ 신청서에 희망하는 사업의 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
 - ※ 중구 일자리와 서울시 일자리에 중복 신청 불가(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됩니다.)
 -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후 중구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 작성 후 제출
 - ※ 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

○ 구비서류

[필수 사항]

- ① 중구 동행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(동주민센터 비치, 희망 사업번호 기재)
- ②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(동주민센터 비치, 본인 및 배우자,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)
- ③ 구직등록확인(필)증 (중구 일자리플러스센터(구청 별관1층) 방문·상담 후 발급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)
- ④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(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; 동주민센터 비치)

[선택 사항] 기점대상 확인 (해당자에 한해 제출, 제출자에 한해 인정)

- ⑤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(중복가점 불가)
 - ▷ 쪽방주민 : 쪽방주민 확인서
 - ▷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
 - ▷ 취업보호·지원대상자 : 국가유공자증,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(보훈청 발급)
 - ▷ 여성가장(세대주) - 주민등록상 남편 등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입증하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 - ▷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 증명서
 - ▷ 노숙인 : 관련시설(노숙인 쉼터)에서 받은 추천서
 - ▷ 북한이탈주민 : 등록확인서
 - ▷ 결혼이민자 : (국적 취득 전) 외국인 등록증
(국적 취득 후)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
- ⑥ 재산 499백만원 초과 시 : 대출증명서,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
- ⑦ 자격 또는 경력·능력 증빙서류 : 해당 증명서

신청자격 및 선발기준

□ 신청자격

-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중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
 -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
 -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, 쪽방주민(납대문)임이 증명된 자
 -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등 가족 합산 재산(주택, 토지, 건축물, 자동차 등)이 499백만원 이하인 자
 - 세대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자

★ 타 직접일자리사업과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
★ 사업 참여 후에도 배제 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사업 참여자에서 제외됩니다. ★

참여배제 대상(접수일 기준)

▶ **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, 실업급여 수급자**

※ 단,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(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)

▶ **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% 초과 혹은 재산(주택, 자동차 등)이 499백만원 초과인 자**
(단위 : 원/월)

가구원 수	기준중위소득 80%
1인	1,782,756
2인	2,946,087
3인	3,771,726
4인	4,583,930
5인	5,356,588
6인	6,094,695

※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(동거인 포함)

※ 근로소득은 고용산재, 국민연금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, 기타소득은 군인연금, 국세청 종합·사업 소득 모두 합산

▶ **1세대 2인 참여자**

▶ **참여기간 : 2년간 2회까지 가능(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)**

- 60세이상 고령자 :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,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
- 지역공동체 일자리, 어르신 일자리,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(공공)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**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(단,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)**
- **쪽방주민, 장애인 및 노숙인 :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, 연속참여 3회 허용**

※ **쪽방주민 : 서울 5대 쪽방촌 [종로구(돈의동, 창신동), 중구(남대문), 용산구(서울역), 영등포구(영등포)] 한정**

▶ **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**

▶ **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**

▶ **아동·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, 「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아동복지법」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**

▶ **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**

▶ **정부 훈령·예규·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**

▶ **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·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**

□ 선발기준

○ **사업별 자격(우대) 조건, 재산보유액,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, 세대주, 부양가족 수, 취업 취약계층, 자격증, 사업별 고려요소 등**

○ **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**

-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
 - ※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
-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

임금 및 근로조건

□ 임금 : 시급 9,860원, 부대경비(간식비) 1일 6,000원 별도, 4대보험 가입 등

※ 급여는 매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월급으로 지급하되, 미사용 연차수당은 계약종료 후 정산지급 단, 임금지급일(10일)이 휴일인 경우, 다음 첫 근무일까지 지급

사업구분	6시간 사업	4시간 사업	3시간 사업	비고
일당기준	60,000원	40,000원	30,000원	천원미만 올림

□ 근로조건 : 1일 6시간 이내, 주 5일 근무 원칙, 주휴·연차수당 지급

※ 사업개시일 기준 만 70세 이상(1954. 7. 1. 이전 출생)인 자는 1일 근로시간 4시간 이내로 제한

결 과 안 내

□ 선발자 발표 : 2024. 6. 21.(금)예정 ※일정 변동될 수 있음

- 선발 및 미선발 여부는 개별 문자통보 및 구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
- ※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(휴대폰 및 유선전화) 기재

기타(유의)사항

- 사업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하신 신청서 등 일체 실물 서류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- 가점사항은 증명서 등 서류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선발 후에 각종 신청서 및 증명서 등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참여 부적합 및 배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참여자 (중도)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 중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본 공고문(선발일정)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별도 안내합니다.
- 본 사업 참여에 따라 소득 발생 등의 사유로 복지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, 신청자는 관련 내용을 사전확인 후 응시하기 바랍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(☎02-3396-527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